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3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정성호·김남희·김성환

김영진 · 김정호 · 문진석

박은정・박 정・안규백

안태준 • 윤후덕 • 임미애

정준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,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 직을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,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 로써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편법 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,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손쉽게 사 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,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허용되는 규 정을 마련하여,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, 제1 9조제2항 신설)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"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"배우자 출산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"를 "근로자로부터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"배우자 출산휴가"라 한다)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청구"를 "통지"로 한다.

제19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2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,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본다.

제19조의2제4항 단서 중 "제19조제2항"을 "제19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37조제2항제3호 중 "제19조제3항"을 "제19조제4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"제19조제1항·제4항"을 "제19조제1항·제5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	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	근로자로부터 배우
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"배	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
우자 출산휴가"라 한다)를 청	"배우자 출산휴가"라 한다)를
<u>구하는 경우에</u> 10일의 휴가를	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
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사용한	<u>날부터</u>
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	3
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	
일이 지나면 <u>청구</u> 할 수 없다.	<u>통지</u>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육아휴직) ① (생 략)	제19조(육아휴직) ① (현행과 같
	승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신
	청에 대해 사업주가 21일 이내
	에 승인여부를 회신하지 않는
	경우,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
	<u>로 본다.</u>
<u>②</u> ~ <u>⑥</u> (생 략)	<u>③</u> ~ <u>⑦</u> (현행 제2항부터 제6
	항까지와 같음)
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	제19조의2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	4

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기간 이내로 한다.

⑤ ~ ⑦ (생 략)

제37조(벌칙) ① (생 략)

-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2의2. (생 략)
- 3.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 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,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

4. ~ 9. (생략)

- ③ (생 략)
-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

 ⑤ ~ ⑦ (현행과 같음) 제37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②
 1. ~ 2의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19조제4항</u>
4. ~ 9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 ④

- 의 벌금에 처한다.
- 1. ~ 3. (생략)
- 4. 제19조제1항·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, 육아휴직을 마친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
- 5. 6. (생략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19조제1항·제5항</u>
,
5.·6. (현행과 같음)
D. · O. (연맹과 崔吉)